

#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3551호
----------	---------

제출년월일 2024. 11. .  
제출자 황성석 의원

## 1. 제안이유

- 김포시 관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여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김포시 공동주택의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2조)  
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안 제3조~4조)  
다. 대상사업 등 (안 제5조)  
라. 연구 및 조사 (안 제6조)  
마.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권장 (안 제7조)  
바. 포상 및 시행규칙 (안 제8조~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김포시 주택 조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김포시 포상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협의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11. . ~ 2024. 11. .  
나) 예고결과 :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4. 11. . ~ 2024. 11. .  
나) 협의결과 :  
3) 관련부서 : 주택과

#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부과 및 적립 관련 교육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각종 지원
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상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우수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사업 사업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평가 시 가점을 반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김포시 주택조례」 제17조에 따른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연구 및 조사)** 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장기 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 등에 대해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조사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에 연구 및 조사 업무를 위탁하거나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장)**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행한 조사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다. 주택관리업자
  - 라. 임대사업자
  -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주택관리사”란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삭제 <2016. 1. 19.>
  17. 삭제 <2016. 1. 19.>
  18.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김포시 주택 조례

[시행 2023. 8. 9.]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067호, 2023. 8. 9., 일부개정]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민간단체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3.8.9.>

##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 2022. 9. 21.]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928호, 2022. 9.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4., 2022.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김포시장(이 조례에서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출연기관(이 조례에서 "산하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김포시(이 조례에서 "시"라 한다)가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③ 삭제 <2020.2.14.>

③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0.2.14.> ]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5. 상급기관의 운영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지정된 경우

③ 재계약하는 사무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2.14.]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2.14.]

[중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2.14.>]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개정 2020.2.14.>

2. 재정부담능력 <개정 2020.2.14.>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신설 2020.2.14.>
4. 책임능력 및 공신력 <신설 2020.2.14.>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신설 2020.2.14.>

[제6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2.14.>]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14.>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김포시 사무수탁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4.>

[제7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2.14.>]

**제9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성과평가, 재계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1. 해당 민간위탁사무 관련 관계공무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2.14.>

[제8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2.14.>]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2.14.>]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2.14.]

[중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2.14.>]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20.2.14.>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20.2.14.>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2.14.>]

**제13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14.]

**제14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7.2.>

② 협약서에는 위탁기관,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수탁기관의 의무·준수사항,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2.14.>]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2.14.>]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2.14.>]

**제17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관련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2.14.>]

**제18조(사용료 징수 등)**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2.14.>]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았을 때
2. 수탁기관이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2.14.>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2.14.>]

**제20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2.14.>]

## **제21조 삭제 <2021.7.2.>**

**제2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는 필요시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0.2.14.]

**제23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위탁기

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② 시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제20조에서 이동 2020.2.14.]

**제24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제23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14.]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2.14.]

## 김포시 포상조례

[시행 2024. 3. 27.]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124호, 2024. 3.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질서 확립과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숭선수범한 자 <개정 2020.7.1.>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성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1호 내지 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항의 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및 기타 산하기관의 장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 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에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2008.1.4., 2022.9.21.)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9)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1998.10.13, 2013.7.15, 2014.8.4, 2018.9.3, 2024.3.27.)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